

## 인권 방침

효성첨단소재의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행복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효성첨단소재의 가치체계인 "Hyosung Way"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성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에서 제시하는 노동 기준을 지지하며, 본사가 위치한 한국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노동 인권 및 근로 조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효성첨단소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제정 : 2018년 06월 01일

개정 : 2019년 08월 30일

## 인권 원칙

### 차별금지

인종, 국가, 성, 언어, 종교, 민족, 장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학연 및 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가진다.

### 공정한 보상과 기회 제공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며,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진다.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원은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안전한 근무환경

임직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개인 사생활 보호

직원 개인의 정보와 가족, 주택, 통신 등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간섭 받지 않는다.

## 근로조건 준수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정기적 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한다.

## 강제 및 아동 노동 금지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과 같이 임직원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구속하거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 추구

효성첨단소재는 협력회사를 동등한 동반자적 위치로 인정하여 우월한 직위를 악용하지 않으며, 나아가 협력회사의 인권 확대에 기여한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효성첨단소재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행한다.

## 정보의 투명성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한다.

## 고객 정보 보호

고객의 정보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효성첨단소재(주) 인권원칙

제정 : 2018년 06월 1일

개정 : 2019년 08월 30일